



- 문의 :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 권영학 과장(044-204-7520), 조무근 사무관(7524), 최서영 사무관(7528)  
벤처혁신정책과 박상용 과장(044-204-7700), 윤성웅 사무관(7703)  
소상공인정책과 배석희 과장(044-204-7820), 이제홍 사무관(789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리스크준법실 이미자 실장(055-751-9590), 김영재 팀장(96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김원범 실장(042-363-7201), 박미영 과장(720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조대홍 부장(051-606-7460), 이정우 부부장(74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한규식 부장(042-480-4030), 김지연 부부장(4032)

##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연장

- 올해 3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20.3월 이전 지원자금·보증)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한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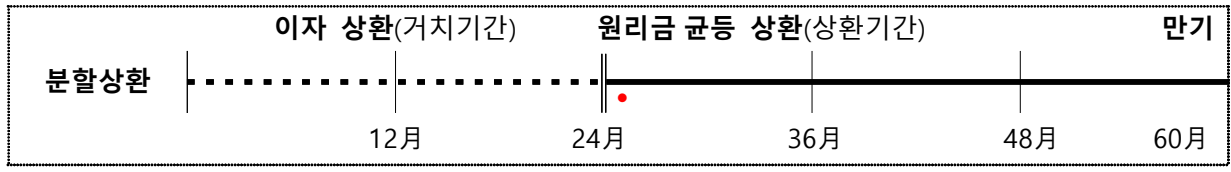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 '20.4월부터 지원한 「코로나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조원\*」의  
원금상환이 '22. 4월부터 도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3조원, ② 소진공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2.7조원

◀ 5년 대출상품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



이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6년)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  
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  
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 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